

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3. 2.

運 營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04호로 2021년 2월 17일 이규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연구단체의 구성,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
다.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5조~제7조)

라.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
마. 연구활동비,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바. 연구단체의 활동계획변경,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함
(안 제10조~제12조)

사.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~제14조)

아. 의회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결과(2021. 2. 19. ~ 2. 24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, 별지 6개 서식으로 구성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를 신설하여 “의원연구단체, 연구활동비, 의원 정책개발비”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,
- 안 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연구단체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,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간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음.

- **안 제5조부터 제7조**까지는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**안 제8조와 제9조**는 연구단체 지원과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,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“5퍼센트 범위”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“10퍼센트 범위”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단서조항으로 “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”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, 2021년도 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“의정운영공통경비”로 1억 1,81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의 10퍼센트이면 약 1,181만원이 해당됨. 지원액을 높인 것은 연구단체의 수가 늘어날 경우 단체별로 충분하지 못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기에, 총액을 확대하여 위원이 다양한 정책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. 다만, 각 연구단체당 300만원의 한도를 둬으로써 기존의 5퍼센트인 590만원 내에서 2개의 연구단체 지원액에 상당하도록 하였음.
- **안 제10조**는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을 신설하여 연구단체가 변경신청을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.

- **안 제12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**의 개정은 연구활동 기간을 매년 11월 말까지로 하고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하고,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음. 이는 **안 제14조의 연구단체 존속기한**을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,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, 결과보고서 제출에서 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까지 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○ 검토 결과

본 전부개정 조례안은, 기존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-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**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